

음악대학 출석인정에 관한 운영지침

시행일 : 2016.9.1

제1조(목적)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(출석인정)에 의거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대상) 음악대학 소속 학부 학생 및 음악대학 관련 행사 참여 타 단과대학 학생

제3조(신청방법)

가. 공식적인 학교 연주 행사(정기연주회 리허설 및 연주회) / Master Class 시행 / 중간·기말 전공실기 시험 시행에 한해 적용되며 행정실 제출의뢰, 명단확인 후 음악대학 학장 승인 완료 된 “출석협조의뢰”업무연락의 문서를 받아 출석인정신청서(일반)와 함께 해당 강좌 담당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후 인정 여부를 의뢰한다.

나. 강좌 담당교수님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 시기) 본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 시기) 본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